

2024 UDC 정책컨퍼런스

신지혜 (한국외국어대학교)

| 2024. 11. 13.

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私法적 성질

- Unidroit 「디지털 자산과 사법 원칙」에 대한 비판적 소개를 중심으로

UNIROIT

- **사법통일국제연구소(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)**
 - 로마에 본부를 둔 독립적인 정부 간 기구
 - 회원국 간의 사법, 특히 상법을 현대화하고 조화시키고 조정하기 위한 요구와 방법을 연구
 - 5개 대륙 / 65개 회원국

UNIROIT Digital Asset and Private Law Project

- 2020년 9월 제99회 이사회에서 프로젝트 출범 승인
-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친 Working Group 회의 진행
- Drafting Committee에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원칙 초안 작성, 수정
- 2023년 1월 10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 절차 진행
- 2023년 5월 이사회(Governing Committee)에서 원칙 채택
- 2023년 12월 총회(General Assembly)에서 채택된 원칙 보고

UNIROIT Digital Asset and Private Law Principles

➤ 원칙(Principles) + 주석(Commentary)으로 구성됨

➤ 개관

➤ 제1장: 범위 및 정의

- 제1조: 범위
- 제2조: 정의
- 제3조: 일반원칙
- 제4조: 연결된 자산(linked assets)

➤ 제2장: 국제사법

- 제5조: 준거법

UNIROIT Digital Asset and Private Law Principles

➤ 제3장: 지배(Control)와 이전

- 제6조: 지배
- 제7조: 디지털 자산 지배자의 자격증명
- 제8조: 선의취득
- 제9조: 양수인의 권리

➤ 제4장: 커스터디(Custody)

- 제10조: 커스터디
- 제11조: 커스터디언이 고객에게 부담하는 의무
- 제12조: 선의 고객
- 제13조: 커스터디언의 파산과 채권자들의 청구

UNIROIT Digital Asset and Private Law Principles

➤ 제5장: 담보 거래

- 제14조: 담보 거래 일반
- 제15조: 대세효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배
- 제16조: 담보권의 우열
- 제17조: 담보권의 집행

➤ 제6장: 강제집행을 포함한 절차법

- 제18조: 강제집행을 포함한 절차법

➤ 제7장: 파산

- 제19조: 디지털 자산의 권리귀속 관계(proprietary right)에 관한 파산의 효과

개관

➤ 원칙 제정 이유

-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거래비용 절감 도모
- 회원국들이 이 원칙에 합치되는 입법을 채택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국제거래에서 예측가능성 높임

➤ 원칙 적용범위

- 모든 디지털 자산
- 다만 지배의 대상이 되는 것에 국한됨

개관

➤ 성격

▪ 기술중립적

-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전제로 하지 않고 모든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함
- 다만 control의 대상인 경우에만 이 원칙이 적용됨

▪ 법역중립적

- 특정한 법제나 법률 시스템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님
- 이 원칙을 자신의 고유한 법률 시스템에서 어떻게 시행할지는 각국이 결정

▪ 일반 私法 원칙

- 특정 법역(소비자법, 상법 등)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님
- 규제법 아님
- 핵심적 규칙과 기준만 다루는 것이고, 모든 사법적 쟁점을 다루는 것은 아님

지배가능한 전자기록(controllable electronic records)

➤ 지배 인정 요건

- ① 타인이 가상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배타적 능력
- ② 자신이 그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능력

➤ 지배의 효과

- 사실적 개념에 불과하며, 지배상태에서 곧바로 권리까지 내포하는 것 아님
- 권리귀속 관계(proprietary interest)를 판별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
- 지배 상태를 외부에 인식시킴으로써 자격증명(identification)이 이루어짐

➤ 평가

- 지배라는 개념을 통해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권리귀속 관계에 대해 규명
- 개념 도입 실익?
 - 법적인 문제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?
 - 現狀을 그대로 설명한 것 외에 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?

선의취득

➤ 선의취득 내지 즉시취득의 인정

- 지배 이전 당시 선의인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즉시 원시취득
- 가상자산 취득자에게 미리 조회, 조사할 의무 없음
- 강한 유동성 보장과 법적 확신 제공

➤ 평가

-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 / 거래비용 절감
-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온체인 거래에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란?
- 선의취득 규정이 부존재한다면 과연 유동성이 저해되는가?

담보권 설정

➤ 담보권 설정의 방법과 효력

- 가상자산이 담보의 대상이 된다는 점 명시
- 지배를 통한 담보권 설정으로 다른 방법에 의한 담보권 설정에 비해 우선권 확보

➤ 평가

- 담보 대상임을 명시하고 지배를 기준으로 삼은 것 타당
- 구체적인 담보권 설정 방법?
 - 양도담보 외의 방법이 가능한가?
 -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균형있는 담보권 설정 방법
- 기초자산 부재와 그로 인한 급격한 가격변동의 경우 현실적 담보 설정 가능성과 가치평가 문제
- 우리나라의 담보제도 하에서의 의미

커스터디

➤ 커스터디

-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 중 오프체인 거래에 관한 규정
- 규제법적 측면 아니라 私法적 측면을 담은 것
- 가상자산에 대한 지배는 커스터디언에게 인정
- 분별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, 분별의무 부과 → 환취권 인정으로 필연적 연결은 아님 주의

➤ 평가

- 실천적 의미를 지니는 부분
- 커스터디언 파산시 일종의 환취권 인정 ← 법적 성질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책적 결정
- 커스터디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환취권 적용되지 않음

강제집행과 파산시의 처리

➤ 강제집행과 파산시의 처리 규정

-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
- 지배를 통한 권리귀속 관계가 파산시에도 유지된다는 점 명시

➤ 평가

-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, 선언적 의미만을 가짐
- 커스터디언 파산의 경우는 커스터디 부분에서 규정
- 가격평가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
- Unidroit의 새로운 project에서 작업이 진행 중

우리법에의 시사점

➤ 가상자산의 사법상 성질론을 다룬 것 아님

-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은 권리귀속 관계에 관해 정하였을 뿐 사법상 성질을 규정한 것 아님
 - Proprietary right = 物權 아님

➤ 거의 대부분의 규정은 온체인 거래를 전제로 함

- 사실상 오프체인 거래가 主流이므로, 현실적인 의미가 퇴색됨
- 오프체인 거래에 관한 커스터디 조항은 환취권에 관해서 의미가 있음
- 온체인 거래의 現狀을 그대로 규정화한 것이고, 새로운 법적 질서를 구축한 것은 아님
- 온체인 거래에서 강제집행이나 파산시 처리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

➤ 선언적 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며, 실천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논의와 접근법이 필요